

2026년도 『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협업기관이 중소기업(협력사 또는 비협력사)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I. 사업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 IoT,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적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을 지원하여 제품 설계 역량 제고 및 생산 공정 개선 지원

II. 사업 지원계획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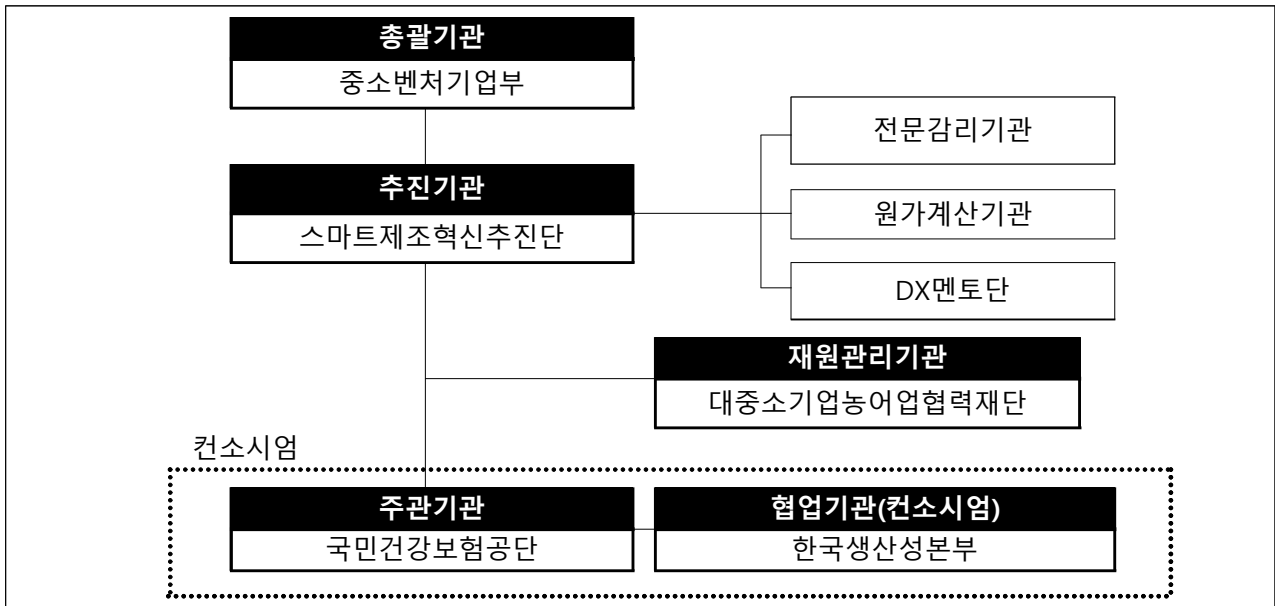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5개사

- 고도화(목표수준 중간1 이상) 3개사
- 기초(목표수준 기초) 2개사

* 단, 기초 또는 고도화 유형별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단일 유형으로만 선발 가능

□ 추진체계



□ 지원내용

- (구축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구 분	지원유형 (유형1)	지원 기업수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 (자부담)	합계
총 구축비용	고도화	3개사	0.18억원	0.24억원	0.18억원	0.6억원
	기초	2개사				
분담비율			30%	40%	30%	100%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사업기간(최대)
고도화	- 중간1 수준	0.18억원 (총사업비 30%)	0.24억원 (총사업비 40%)	9개월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 * 중간1→중간1	0.18억원 (총사업비 30%)	0.24억원 (총사업비 40%)	6개월
기초	- 기초 수준	0.18억원 (총사업비 30%)	0.24억원 (총사업비 40%)	6개월

- * (기초) 생산정보 집계 자동화,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
-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신청자격

구분	지원 유형	신청자격		지원구분	
		기업규모	목표수준	협력사	비협력사
도입 기업	고도화 (동일수준)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	○
	고도화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기업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
	기초		- 기초 수준 구축 예정기업 * 생산정보 집계 자동화	○	○
	참여우대		- 중소기업기술마켓 입점 기업	○	○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 * 구축목표 수준이 기초인 경우 1회만 지원가능하며, 고도화(중간1 이상)은 구축수준별 2회까지 지원 가능

※ 신청자격 기타사항

- * 국내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5년까지 모든 지원 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 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4월 8일(수) ~ 2026년 4월 24일(금) 18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제출서류 ①~⑦(하단 참조)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jhnam@kpc.or.kr(남주혁 위원, ☎ 02-724-1196)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도입기업	공급기업	비고
1	참가신청서 및 참가신청내역서[붙임2-양식①]	○	○	필수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붙임2-양식②]	○	○	
3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서 1부[붙임2-양식③]	○	○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5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확인서 유효기간이 사업기간 내에 있어야 함	○	X	
6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	
7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선택

* 관련양식은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에 문의

□ 지원절차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완료 후 수준측정)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 선정절차 및 방법

- 접수신청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 선정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협업기관 공동 서면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선정 평가 기준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업 참여 의지
* 스마트화 수준	* 스마트공장 추진 계획의 구체성

*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최종선정 : 선정기업 적격여부 심사(타 주관기관 중복 선정업체 불가)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6년 사업신청 가능)
 -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타사항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대표, 실무자),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1 확인]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선정 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도입)기업에게 있음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 수혜기업 중 우수사례(목표 수준 달성시) 발굴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 우수기업) 예정
- 스마트공장 구축 후, '26. 11. 31.까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 기술임치(삼자간)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임치수수료 전액 지원
- 수혜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보호 관련 정부사업(기술보호 전문가 현장 자문 등) 및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필수 참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 전액 지원

IV. 문의 및 연락처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문의사항	연락처
주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	033-736-1672
협업기관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96

붙임 1**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붙임 2**[첨부자료] 작성양식**

구 분	서 식 명	비고
양식 ①	□ 사업 참가신청서 및 참가신청내역서	제출서류 (필수)
양식 ②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③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서	

참가신청 내역서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분야	(예시) 운영시스템구축 분야 필수 기재	
목표 및 필요성 / 개선방안 및 구축목표		
안전관리 노력도	안전관련 그 간 귀사의 노력 또는 동 사업 참여를 통해 00분야 안전도 향상 의지 등	
기대효과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양식-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3.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기업명

(인)

<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기업진흥공단 ③기술보증기금 ④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⑥창업진흥원 ⑦중소기업유통센터 ⑧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⑨한국벤처투자(주) ⑩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	제공 목적	1. 중소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 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 산품
	보유.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업체명 작성 ○○○이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양식-③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서

사업연도	2026	도입기업명	00000000
------	------	-------	----------

도입기업은 중소기업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해당유무(체크)
도입기업(중소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p>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p> <p>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26년 00월 00일

도입기업 : (주)00000

(직인)